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상여건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신설 등 >

■ 정혜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47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상여건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신설	2
2.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등을 추가	5

I. 제안경위

2024년 9월 4일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발생이나 작업장의 온도·소음·진동이나 환기·채광 등 환경요인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작업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설·한파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황사·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조치나 작업중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건조치의 대상에 ‘폭염, 한파 등 기상여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추가하고, 기상 특보가 발령되거나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도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51조).

Ⅲ. 검토의견

1. 기상여건 등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상여건이나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39조(보건조치)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u>7. 폭염, 한파 등의 기상여건이나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u>

나. 검토의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39조제1항¹⁾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호)²⁾.

개정안은 폭염 및 한파 등 기상여건이나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상황에서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열악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다만, 개정안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고열·한랭’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명시된 점을³⁾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폭염·한파” 및 “고열·한랭”을 보건조치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미 지난 10월 22일 개정된 내용이고, “황사·미세먼지”는 이미 현행법상 보건조치 의무대상이므로 개정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3)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0522호)」 2024년 10월 22일 개정, 2025년 6월 1일 시행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등을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사업주가 작업 중지 시 취하는 조치에 휴식부여를 추가하고, 위험 해소 전 작업중지 해제를 금지하며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작업장소의 유해인자 노출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옥외 작업 중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실내 작업 중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1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u>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u>대피시키는</u>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 - <u>대피시키고 휴식을 부여하는</u> ----- ----- ----- <u>하며, 그 위험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할 수 없다.</u>
<신 설>	1.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u>
<신 설>	2. <u>작업장소의 유해인자 노출 농도가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u>
<신 설>	3. <u>옥외 작업 중 「기상법」 제13</u>

<신 설>	<u>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가 발령 된 경우</u> 4. <u>실내 작업 중 더위 체감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사업주의 작업중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①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사업주의 작업중지’⁴⁾와 ②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⁵⁾로서 작업중지가 있고, 전자의 경우 작업중지시 필요한 조치로서 근로자 대피를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①취하는 조치에 휴식부여를 추가하고, ②위험 해소 전 작업중지 해제를 금지하며 ③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유해인자 노출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옥외 작업 중 기상특보가 발령·실내 작업 중 더위 체감지수가 기준

4)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주 작업중지 발동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제 요건은 엄격히 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정부 의견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상황으로부터 근로자를 대피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제도 취지상 휴식을 작업중지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로 보기는 어렵고, 개정안에 따라 휴식을 부여하게 되면 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른 조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업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위반시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 필요하며,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해야하므로 입법 실익이 적을 뿐 아니라, 개정안은 현행법의 ‘급박한 위험’ 이외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⁶⁾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해야함을 규정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실시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작업중지 의무가 부과되도록 하는데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실시 현황 등에 따라 사업장의 위험수준은 상이할 수 있으며,⁷⁾ 개선조치 등을 통해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열거한 사유

6) ‘유해인자 노출 농도가 제107조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옥외 작업 중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가 발령된 경우’,
‘실내작업 중 더위 체감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7) 톨루엔 등 화학 탱크와 같은 밀폐공간의 경우, 그 내부의 유해인자 농도는 높더라도 송기마스크, 보호복 착용 등 보호조치를 했다면 실제 근로자에 노출되는 수준은 낮아져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게 됨. 또한 폭염이나 더위도 온도(지수)가 높더라도 물, 충분한 휴식, 냉방장치 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여부에 따라 사업장별 위험상황은 상이할 수 있음

만으로 즉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기상청은 기상청 특보가 모든 종류의 산업활동에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과 산업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고,⁸⁾ 기상청에서는 더위체감지수를 '20년부터 사용하지 않으며, 실외 기상환경을 고려한 체감온도를 바탕으로 폭염 특보를 운영하고 있어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

8) 예를 들어 건조특보의 경우 산업활동 과정에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